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0호, 제41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건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7,028,460
40	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	인재육성 장학사업	651,215
41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구민회관 등 운영 도서관 운영	6,377,245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2019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
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,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,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검토결과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
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

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.

- 따라서, 위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